

충청북도시.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3월 16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3월 16일

3. 제안이유

시.군통합, 읍.면.동의 신설.분할, 인구수의 증감등에 따라 시군의회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선거구 및 정수조정 근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로 함.
- 선거구는 읍면동수의 증가에 따라 158선거구에서 163선거구로 5개선거구를 신설하였으며, 의원정수는 읍면동 신설 중 5명, 인구 2만초과로 변동 중 5명, 총 10명이 증가하였고, 반면 인구가 2만이하로 감소되어

3명이 줄어 총정수는 173명에서 180명으로 7명이 순 증가함.

※ 증감사유

· 읍면동신설(증5) : 청주시 복대1, 복대2, 봉명2.송정, 수곡동,
단양군 단성면

· 인구2만초과(증5) : 청주시 윤량.사천, 금천, 용암.용장.방서동,
충주시 연수동, 제천시 청진동

· 인구2만이하(△3) : 청주시 내덕1, 사직2동, 보은군 보은읍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시.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이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조 및 23조에 의거하여 동별 1인 원칙과 인구2만초과시 1인을 추가하도록 되었는데 오는 6월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로부터 자치구시.군의회의원정수가 현 173명에서 7명이 증가 180명으로 조정되며 선거구 또한 읍면동 수의 증가에 따라 158선거구에서 5개선거구가 증가한 163선거구로 조정되는데 이와관련하여 현행 조례 조문의 적용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충청북도 시.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